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56기 임시주주총회)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 평안을 기원합니다.

상법 제363조 및 당사 정관 제19조에 의거 제56기 임시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시 : 2021년 12월 30일(목) 오전 10시
2. 장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3로 20, 해운대센텀호텔 18층
3. 회의목적사항

(부의안건)

1) 제1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1-1호 의안 : 사내이사 최승환

성명	생년월일	신규선임여부	임기	주요경력
최승환	1964.04.25	재선임	3	서울대 법학과 졸업 삼성전자 국제금융 근무 유엔환경기구 하론위원회 상임위원 (現)(주)한창 대표이사

제1-2호 의안 : 사내이사 박희동

성명	생년월일	신규선임여부	임기	주요경력
박희동	1960.02.13	신규선임	3	단국대 화학과 졸업 금성정밀공업(주)(현, LIG넥스원) 근무 (現)한주케미칼(주) 대표이사

제1-3호 의안 : 사외이사 이준승

성명	생년월일	신규선임여부	임기	주요경력
이준승	1964.03.17	신규선임	3	서울대 법과대학원 졸업 제20기 사법연수원 수료 (現)법무법인(유) 광장

2) 제2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성명	생년월일	신규선임여부	임기	주요경력
홍한표	1947.08.01	재선임	3	경기대 경영학과 졸업 (주)크라운제과 전무이사 코아통상 부사장 (현)(주)한창 감사

- 3) 제3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별첨 참조)
- 4) 제4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5) 제5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542조의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우리 회사의 본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팀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른 실물증권 보유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

2019년 9월 16일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어 실물증권은 효력이 상실되었으며, 한국예탁결제원의 특별(명부)계좌주주로 전자등록되어 권리행사 등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보유 중인 실물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에 방문하여 전자등록으로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6. 의결권 행사 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한 주주총회 참석

- 본인 직접행사 : 신분증
- 대리 행사 : 위임장(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2021년 12월 15일
주식회사 한창
대표이사 최승환

(별첨) 정관 신규조문대비표(안) (제43차 개정)

개정 전	개정 후	비 고
<p>제2조(목적) (중 략) 23) 전 각호의 사업목적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된 일체의 부대사업 및 투자</p>	<p>제2조(목적) (중 략) 23) <u>실탄사격장비 제조 및 설비</u> 24) <u>영상사격장비 제조 및 설치</u> 25) <u>개인화기, 대공화기, 항공장비 시뮬레이터 제작</u> 26) <u>사격, 전투 교육용 소프트웨어 제작</u> 27) <u>항공전자 및 위성 지원장비 소프트웨어 제작</u> 28) <u>지능형 로봇, 군사용 로봇, 경찰용 로봇 제작</u> 29) <u>전자상거래 및 관련 유통업</u> 30) <u>온라인 플랫폼 사업</u> 31) <u>전자상거래 중개업</u> 32) <u>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u> 33) <u>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중개업</u> 34) <u>도매 및 상품 중개업</u> 35) <u>통신판매중개업</u> 36) 전 각호의 사업목적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된 일체의 부대사업 및 투자</p>	<p>-사업다각화</p>
<p>제8조(주권의 종류) 이 회사가 발행할 주권의 종류는 <u>일주권, 오주권, 일십주권, 오십주권, 일백주권, 오백주권, 일천주권, 일만주권의 8종으로 한다.</u></p>	<p>제8조(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u>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u></p>	<p>-상장회사의 경우 발행하는 모든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에 대한 전자등록이 사실상 의무화됨에 따라 주권의 종류 삭제 및 관련 근거를 신설</p>
<p>제10조의2(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가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 년도의 직전 영업 년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p>	<p>제10조의2(동등배당) 이 회사는 배당 기준일 현재 발행(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동종 주식에 대하여 발행일에 관계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당한다.</p>	<p>-상법 개정으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당에 있어 직전 영업연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볼 수 있도록한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배당기준일 및</p>

개정 전	개정 후	비 고
		주식의 발행 시기와 관계없이 모든 주식에 대하여 동등 배당하는 취지로 내용을 정비
<p>제11조(명의개서대리인) ① 이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p> <p>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가 결의로 정한다.</p> <p>③ 이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p> <p>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의 명의개서대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p>	<p>제11조(명의개서대리인) ① <좌 동></p> <p>② <좌 동></p> <p>③ 이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u>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u>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p> <p>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u>명의개서대리인이 정한 관련 업무규정에 따른다.</u></p>	<p>-주식등의 전자등록에 따른 주식사무처리 변경 내용 반영</p> <p>-전자등록제도에 도입에 따른 증권에 대한 명의개서대행업무 사라진 현황을 반영</p>
<p>제12조(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①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그 성명,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 등을 제11조의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②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대한민국내에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의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같다.</p>	<p>제12조 <삭 제></p>	<p>-주식이 전자등록될 경우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주주 등의 제반정보를 신고할 필요가 없으므로 관련 내용 삭제</p>
<p>제12조 <삭 제></p>	<p>제12조(주주명부 작성·비치) ① 이 회사는 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소유자명세를 통지받은 경우 통지받은 사항과 연월일을 기재하여 주주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p> <p>② 이 회사는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특수관계인 등을 포함한다)의 현황에 변경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p>	<p>-전자증권법 제37조 제6항의 규정내용 반영</p> <p>-전자증권법시행령 제31조 제4항 제3호 가목에 의거 회사가 소유자명세의 작성요</p>

개정 전	개정 후	비 고
	<p>③이 회사는 전자문서로 주주명부를 작성한다.</p>	<p>청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 -전자주주명부의 작성근거 신설</p>
<p>제13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이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p> <p>②이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p> <p>③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u>이사회의 결의로 3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회사는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u></p>	<p>제13조(기준일) ① <삭 제></p> <p>①이 회사는 매결산기 최종일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로 하여금 정기주주총회에서 그 권리를 행사하게 한다.</p> <p>②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u>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의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u></p>	<p>- 전자증권제도 도입에 따른 조문 삭제</p>
<p><신 설></p>	<p>제15조의2(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다만, 사채의 경우 법령에 따라 전자등록이 의무화된 상장사채등을 제외하고는 전자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다.</p>	<p>-상장회사의 경우 발행하는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에 대하여 사실상 전자등록이 의무화됨에 따라 관련 근거 신설 -전자등록이 의무화되지 않은 사채에 대하여 전자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신설</p>
<p>제16조(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1조, <u>제12조의</u>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p>	<p>제16조(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1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p>	<p>-제12조 삭제에 따른 문구 정비</p>
<p>제17조(소집시기) ①이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p>	<p>제17조(소집시기) ① <좌 동></p>	

개 정 전	개 정 후	비 고
②정기주주총회는 매사업년도 종료후 3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사업년도 종료후 3개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기간을 의미하는 경우 개월로 표현을 수정
제29조(이사의 수) 이 회사의 이사는 3명으로 하고, 사외이사는 1명으로 한다. <신 설>	제29조(이사의 수) ①이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4명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는 1명으로 한다. ②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제1항에서 정한 이사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으로 인한 결원시 상법상 예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문구 조정
제32조(이사의 보선) ①~②<생 략> ③사외이사가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관 제29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2조(이사의 보선) ①~②<좌 동> ③ <삭 제>	-제29조 제2항과 내용이 중복되므로 삭제
제33조(대표이사 등의 선임)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대표이사(사장), 부사장, 전무 및 상무 약간 명을 선임할 수 있다.	제33조(대표이사 등의 선임)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대표이사, 부사장, 전무 및 상무 약간 명을 선임할 수 있다.	-대표이사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직위명 예시를 삭제
제34조(이사의 직무) ①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사장, 전무, 상무 및 이사는 사장을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사장)의 유고시에는 위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4조(이사의 직무) ①<좌 동> ②부사장, 전무, 상무 등은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대표이사 유고시 직무대행순서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정관에서 정하지 않고 이사회에서 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
제41조의2(감사) ①~②<생 략> ③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주식 발행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의결권있는 주식발행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 1항의 감사의	제41조의2(감사) ①~②<좌 동> ③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개정 상법 제409조 제3항 반영

개정 전	개정 후	비 고
<p>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소유주식수의 산정에 있어서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는 합산한다.</p> <p><신 설></p>	<p>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p> <p>④감사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상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p>	<p>-개정 상법 제 542조의12 제7항 반영</p>
<p>제43조의2(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선임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선임 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거나 최근 주주명부폐쇄일 기준주주에게 서면이나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 또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hanchang.co.kr)에 게시한다.</p>	<p>제43조의2(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그 사실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p>	<p>-개정 외부감사법 제10조에 따라 외부감사인의 선정권 변경 내용을 반영</p> <p>-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정관을 수시로 개정할 필요가 없도록 조문 정리</p>
<p>제49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7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p>	<p>제49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p>	<p>-</p>

위 임 장

본인은 2021년 12월 30일에 개최하는 (주)한창의 제56기 임시주주총회에서 권유자 (주)한창이 지정하는 김영대를 그 대리인으로 정하고 다음의 내용과 같이 찬반표시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위임합니다.

- 다 음 -

1. 주주번호 :
2. 소유주식수 :
3. 의결권 있는 주식수 :
4. 위임할 주식수 :
5. 주주총회 목적사항 및 목적사항별 찬반 여부

번호	주주총회 목적사항	찬성	반대
제1호 의안	이사선임의 건		
	사내이사 최승환		
	사내이사 박희동		
	사외이사 이준승		
제2호 의안	감사 흥한표 선임의 건		
제3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4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5호 의안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6. 새로 상정된 안건이나 변경 · 수정 안건 등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위임
 - 주주총회시 새로이 상정된 안건이나 각호 의안에 대한 수정안이 상정될 경우에는 대리인이 주주의 의사표시가 위 5번 항목에서 표시된 찬반의 취지에 합치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바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위임합니다.
 - 다만 아래에 명시적으로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주가 주주총회 전까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아래의 지시한 대로 의결권을 행사하겠습니다.

항 목	지 시 내 용

주주명 : (인)
 주민(사업자)등록번호 :
 위임일자 및 위임시간 : 년 월 일 시